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54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이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의 판단 등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사”를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검사는 치료감호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사) ① <u>검사는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이나 심신장애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u> ② <u>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u>	제5조(조사) ① <u>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u> -----. ② <u>검사는 치료감호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u>